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19나372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19나37266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8 선고 2017가단5198956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 1.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C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L

2.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원고 파산자 C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L의 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피고, 항소인 1. A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B

2. D

변론 종결 2021. 6. 21.(피고 1.에 대하여), 2021. 8. 11.(피고 2.에 대하여)

판결 선고 2021. 8. 25.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5. 28. 선고 2017가단5198956 판결

주 문

1. 원고 신용보증기금,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C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L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108,304,431원 및 그 중 90,515,954원에 대하여는 2017. 10. 16.부터 2018. 5. 8.까지, 나머지 17,217,145원에 대하여는 2017. 10. 17.부터 2017. 11. 14.까지는 각 연 10%,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D은 원고 파산자 C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L에게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M 사건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따라 피고 D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세입세출외 출납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 한다)의 파산채권자인 원고 겸 원고 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은 제1심에서 C와 피고 주식회사 B을 상대로 구상금 혹은 연대보증금 108,304,4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구하고, 피고 D을 상대로 C와 피고 D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계약의 취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후 피고 C가 파산하자,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소 중 C에 대한 연대보증금 지급 청구 부분을 C의 파산관재인인 원고 겸 피고 파산관재인 변호사 L(이하 '파산관재인'이라 한다)에 대한 파산채권 확인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가 이 부분 청구를 취하하였고, 파산관재인은 이 법원에서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이 사건 소 중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부분을 수계하면서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1)].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C의 연대보증약정

1)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2014. 6. 16. A 주식회사(2017. 11. 24. 'E 유한책임회사'에 흡수합병되어 해산되었고, E 유한책임회사는 2018. 7. 1. 피고 '주식회사 B'로 조직변경하고 해산하였다. 이하 A 주식회사, E 유한 책임회사, 피고 주식회사 B을 통틀어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을 중소기업자금 대출과 관련한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22,500,000원(이후 18,0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15. 6. 15.(이후 2017. 6. 15.까지로 연장)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회사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C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1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2015. 2. 16.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을 중소기업자금 대출과 관련한 대출 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90,000,000원, 보증기한 2020. 2. 14.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 회사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당시 피고 회사의 업무집행자이던 C는 피고 회사의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제1, 2차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완제일 전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미수위약금, 법적절차비용 등을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데,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는 연 10%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피고 회사는 원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4. 6. 1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2,5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7. 8.경부터 연체를 시작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7. 10. 17. 중소기업은행에게 피고 회사의 채무 17,217,145원(= 원금 17,100,000원 + 이자 117,14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구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571,260원이다.

2) 피고 회사는 원고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15. 2. 16.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9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7. 8.경부터 연체를 시작하여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7. 10. 16. 중소기업은행에게 피고 회사의 채무 90,780,115원(= 원금 90,000,000원 + 이자 780,115원)을 대위변제한 다음 당일 264,161원을 회수하였는데, 위 회수된 금원 부분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72원(=264,161원 × 10% × 1/365일)이다.

다. C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처분

C는 2017. 6. 2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어머니인 피고 D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35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D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6.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접수 제4470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의 진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M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위 경매사건의 배당절차에서 2020. 3. 17. 피고 D이 149,538,104원을 배당받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기술보증기금이 2020. 1.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단800208호로 피고 D의

배당금청구권 중 116,269,533원을,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2020. 3. 5. 피고 D의 배당금청구권 중 350,000,000원에 대한 채권처분금지가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D에게 배당금이 지급되지는 아니하였다.

마. C의 파산 및 파산관재인인 소송수계

C는 제1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 계속 중이던 2020. 8. 21. 파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9하단11968), 변호사 L이 C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위 파산절차에서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연대보증금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다. 한편, 파산관재인은 2020. 12. 18. 이 사건 소 중 피고 D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부분을 수계하여 2021. 2. 18. 부인의 소로 그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 22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C와 연대하여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금과 미수위약금, 법적절차비용 등을 합한 108,304,431원(=제1차신용보증 대위변제금 17,217,145원 + 제2차신용보증 대위변제금 90,780,115원 - 일부 회수금 264,161원 + 일부 회수 부분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 72원 + 법적절차비용 571,260원) 및 그 중 제2차 대위변제금 미회수 잔액인 90,515,954원(=90,780,115원 - 264,161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7. 10. 16.부터 2018. 5. 4.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이 송달된 날인 2018. 5. 8.까지, 제1차 대위변제금 17,217,145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7. 10.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인 2017. 11. 14.까지 각 약정 연체이율인 연 10%,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파산관재인인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인 대상 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이미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후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은 2017. 8. 21. 사실상 영업을 폐업하는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의 대위변제가 현실화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및 C의 사해의사 앞서 든 증거와 제1심 법원의 서울 서초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C는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C가 소유한 부동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사실, ② 피고 회사는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재무상황이 악화되자 2017. 8. 21.경 사실상 영업을 폐지한 사실, ③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업무집행자로 재직하였던 자로 회사의 자금운용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지위에 있었던 사실, ④ 피고 D은 C의 어머니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심화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C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C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3) 피고 D의 악의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 대상 행위라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이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하는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

나.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

1) 관련 법리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저당권을 취득하였다가 선행 저당권의 실행으로 사해의 저당권이 말소되었으나 수익자에게 돌아갈 배당금채권이 있는 경우의 원상회복의 방법으로는, 그 배당금채권이 수익자에게 지급된 경우에는 동액 상당의 가액의 배상으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 등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배당금채권의 양도절차의 이행으로 각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서 양도되었다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할 것이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7806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중 일부가 피고 D에게 배당되었으나, 원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의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실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파산관재인에 의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부인되었으므로, 피고 D은 파산관재인에게 위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공탁자인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와, 원고 파산관재인이 피고 D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판사허일승

판사김수경

판사김우현

별지

1)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항소심에 계속된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수계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고

항소심법원이 소송을 심리·판단할 권한을 계속 가진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